

우)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, 8F[www.kma.org]/ 전화(02)6350-\*\*\*\*/ 전송(02)790-8911  
보험국 국장 김기성 [6574] 보험급여팀장 백영기 [6581] 대리 고영옥 [6573]/E-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11058호

시행일자 2018. 1. 17.

수 신 각 시·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
1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3호(2018. 1. 16)
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265호, 2017.12.29)」 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께 안내 바랍니다.

※ 동 고시 개정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www.mohw.go.kr) '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'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www.kma.org) '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'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주요내용

- 급여 및 예비적 급여로서 선별급여의 확대, 적용을 위한 기준 변경 사항 반영(갑상선기능검사, 누589 Helicobacter Pylori검사 등 총 27항목)
- 급여확대 위한 기준 삭제 사항 반영(가12 보육기, 나553 특수염색검사 등 총 9항목)
- 기타 용어 정리(자65 견인술 1항목)

○ 시행일 : 2018. 4. 1.부터

(대의협 제813-11058호)

시행일자 2018. 1. 17

붙임: 개정고시문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